

Q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 여부와 접착제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은 노동부고시 제97-27호(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규정된 폭발성, 인화성, 독성, 발암성 등 16가지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1%이상(발암성물질은 0.1%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접착제에 대하여는 동 제품의 물리·화학적 성상과 구체적인 구성성분 및 이들의 유해 위험성 등을 파악한 후 위 16가지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MSDS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아파트 신축시 수평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이 10M 이내마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갱폼 사용시 수평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낙하물 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비다,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이나 안전망, 방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공법에 설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방법인 갱폼 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재검정 미신청으로 인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모델의 방호장치의 경우 합격취소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검정합격의 취소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69조의 수거검정 불합격 등 성능상의 하자에 의한 사유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단순히 재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합격의 취소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성능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공동도급계약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갑,을,병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계약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각 출하되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갑,을,병 각 수행자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건설공사이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출·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다만, 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 적용 사업체인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수급인 중 일부 사업체가 동종사업 일괄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주는 해당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갑,을,병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계상하여야 하나, 각 수행자간 분담내역은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지분율에 의한 배분 등 수행자간 내부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시 사망재해에 대한 가중치 적용과 관련하여 하청 또는 임대업 자체만 처벌 받은 사망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재해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원청이 당해 재해발생의 원인에 기인되지 않아 직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입건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나, 당해 건설현장내 안전보건총괄의 책임과 의무는 원청에게 있고, 재해율 산정시 산입하는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현장의 모든 기성액(하청기성분 포함)을 원청에 합산하여 결정되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현장의 기성액과 재해자의 적용은 둘다 원청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치 적용의 유무도 당해 사망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호 라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용된 사망사고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